

##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Jan 31, 2019

### In this Issue

- I. 뉴스기사
- II. 법제도 동향
- III. 삼정 KPMG K-SOX
- IV. Global KPMG SOX
- V. Q&A
- VI. 이벤트

### Key Contacts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SOX: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 I. 뉴스기사

### 국내 동향

- 회계위반 세칙 전면개정...50억 이상 고의분식 모두 제재 [뉴시스]
-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은? [세정신문]
- 상장사 164곳, 내년부터 내부 회계통제시스템 '감사' [조세금융신문]
- 일반회계기준 기업도 종속회사 연결대상에 넣어야 [머니투데이]
- 금융지주, 내부회계제도 정비 '쟁걸음' [비즈니스위치]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에 '내부통제강화-리스크관리' 주문 [연합뉴스]

### 해외 동향

- SEC plans focus on internal controls at year-end [CW]
- IIA reviews 'three lines' model, plans new paper [CW]
- Investors favor SOX 404(b) audit rule, says study [Accounting Today]

[Back to top](#)

## II. 법제도 동향

### 舊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일부 개정

- 개정 배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2005년 6월 제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1차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2차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하 '新모범규준')이 발표됨
  - ▷ 新모범규준은 2013년 5월 개정된 COSO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와 2017년 10월 전부개정된 외부감사법(이하 '新외부감사법')의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함

- ▷ **新모범규준의 시행시기**는 발표일(2018. 6. 28)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은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할 수 있음
- 2018년 12월 13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新모범규준의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舊모범규준**을 적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新외부감사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舊모범규준**에 **新외부감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외부감사법의 변경된 법률명과 조항번호가 반영되었음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주체를 내부회계관리자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 변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대상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주주(총회) 추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명 변경
  - ▷ 개정 전: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 개정 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예시 변경

• **참고자료(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

- [신구조문대비표 및 보고서 예시](#)
- [舊모범규준 등 개정 원문](#)

• **기업의 활용 및 대응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사내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법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 제 3 항~제 7 항에서 정한 내용 포함을 고려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절차 등 (예: 승인의 이유 등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작성·관리하는 방식)
-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면(對面) 보고 받는 절차, 시기 등. 만일 대표자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 회의 개최 절차, 시기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정기총회 개최 1 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는 절차, 시기 등

- ▷ 그 외 다른 관련 사내 규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재량에 따라 법규에서 정한 내용 외에도 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대표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나, 보고 이행 또는 수령 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또는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에도 정비가 필요
-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전문성을 교육 등을 통해 강화
- 내부통제 운영 시 회사의 시스템 등에서 산출된 자료(Information Provided by Entity)와 경영진의 리뷰 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에 대해 정교하고 체계적인 문서화 수행으로 문서화 수준 증대
- IT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여 유효성을 증대하고, Robotic Process Automation 을 활용한 내부통제의 효과성 및 완전성 제고
- 경영진 대상 보상 프로그램이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성과에 연동되도록 함

[Back to top](#)

##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강조

### • 개요

-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함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2018.12.17](#)
- ▷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 금번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검증절차 실시 예상
  - ▷ 회사는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운영해야만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 ▷ 따라서,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상장사의 준비 동향을 살펴보고, 회사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

###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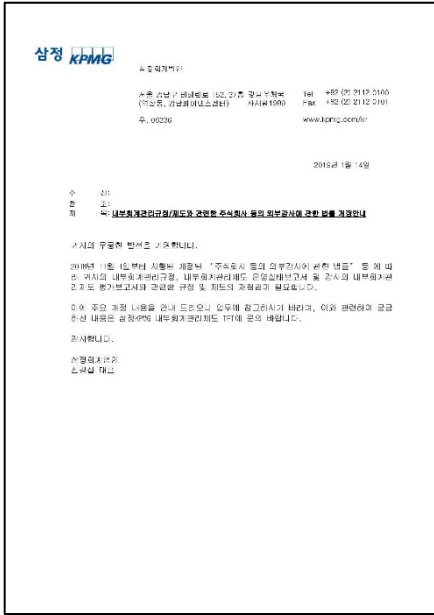
-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2019 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 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 **미국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
  -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회계개혁법(SoX 법)을 제정하고,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
  - **(의견 현황)** '04년 최초 도입시 15.9%에 달했던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은 도입 5년이 경과한 '08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7년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임
  - **(비적정 사유)** 비적정 감사의견은 결산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 회계담당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남
- **감사 전환에 따른 상장사 준비현황**
  - '19년부터 우선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164<sup>(\*)</sup>사로 파악되고 대부분 내부 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 '17년말 153사 + '18.6월말 기준 신규로 자산 2조원 이상된 상장사(11사)
  - 재정비에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됨
    - ▷ 재정비 주요사항으로는,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했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점검하여 외부감사에 대비한 더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대표이사의 책임강화 등 新외부감사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 필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다라도 재정비하는 데 약 6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 보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목적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데 있으므로 동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대표이사의 충분한 관심과 지원)**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Back to top](#)

### III. 삼정KPMG K-SOX

#### 내부회계관리규정/제도와 관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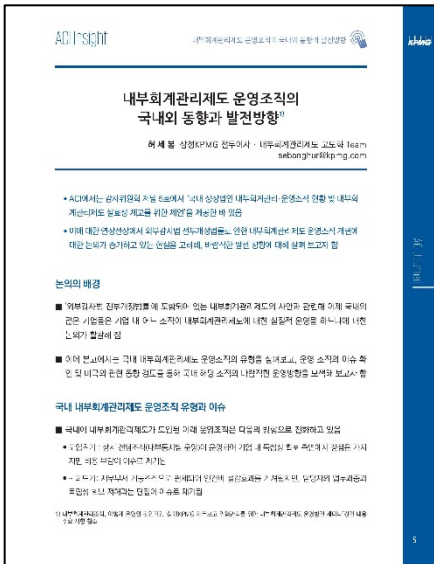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대표자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와 관련한 규정 및 제도의 재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삼정KPMG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부감사법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출처] 삼정KPMG

[Back to top](#)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방향



新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기업 내 어느 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의 유형을 살펴보고, 운영조직의 이슈 확인 및 미국의 관련 동향 검토를 통해 국내 해당 조직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Back to top](#)

### IV. Global KPMG SOX

#### 27th Annu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ymposium Survey



본 보고서는 Global KPMG에서 2017년 11월 개최한 제27회 연례 회계 및 재무보고 심포지엄(Annual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ymposium)에 참석한 524명의 재무보고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재무보고 담당 임원들은 우려하는 주요 사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30%), 사이버 보안(22%)을 꼽았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설문항목은 첨부된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 Q&A

### 출발점(Baseline)의 설정 및 관리 절차 문의

Q.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중 '적용기법 16.2 출발점(Baseline)의 설정'에서 155문단의 세 항목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및 운영 평가 시 출발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55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된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적용이 이뤄진 시점의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최초 평가가 이뤄진 출발점의 결정
- 출발점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경사항 관리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는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되는 것인가요?

A. 문단 155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된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제활동의 최초 설계 시에 통제설계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통제활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통제활동에 **유의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연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대체적인 설계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제활동에 **유의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발생한 시점에서(기중이더라도) 설계의 효과성을 다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에 최초 설계평가된 통제활동과 관련하여 2019년에 **유의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설계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 통제활동이 2020년 6월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6월에 설계평가를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출발점(Baseline)은 2018년 10월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평가 이후에 출발점(Baseline)은 2020년 6월로 다시 설정될 것입니다.

이상은 **설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단 155에서의 출발점은 '설계된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고, **운영**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기준일과는 무관합니다.

**운영의 효과성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의 문단 112에 따라 기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기말에 중간평가의 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한지 추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기준일은 기말 평가기준일입니다.

## 전사적 수준 통제를 통한 개별 통제활동 간소화 가능 여부

Q. 개편된 모범규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11.1 (중략) 예를 들어, 만약 경영진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전사적 수준의 통제에 의해 충분히 관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40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는 하위 수준의 통제가 실패할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도 있지만,** 해당 전사적 수준 통제만으로 재무보고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제 운영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전사적 수준 통제는 잠재적인 왜곡표시를 적발하고 하위 수준의 통제가 실패하였는지 조사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통제에 의하여 적발되기 전까지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금액이 너무 큰 경우 해당 통제는 재무보고 요소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41 전사적 수준 통제는 프로세스, 응용시스템, 거래 또는 계정과목 수준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재무보고 요소의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영진은 재무보고 위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통제를 식별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28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중략)
- 직접 전사 통제(Direct Entity-level Control): 재무제표와 관련된 경영자 주장이 왜곡될 위험을 적절히 방지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된 전사적 수준의 통제를 직접 전사 통제라 한다. 따라서 **직접 전사 통제가 특정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적발 또는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해당 위험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통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직접 전사 통제에 해당)를 통해 관련 왜곡표시 위험이 적절히 적발된다고 평가한 경우 동 위험과 관련된 거래 수준 통제의 식별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본점과 영업조직이 나뉘어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점 내부감사조직이 영업점의 개별적인 업무활동에 대해 철저히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전사적 통제 수준에서 증빙함으로써 영업조직의 개별 업무수행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A. 전사적 수준의 통제활동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개별 거래 수준의 통제활동의 평가를 줄이거나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복된 통제활동에 대해서는 두 번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영업점의 통제활동, 본점의 통제활동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통제활동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제활동의 중복 여부는 통제활동의 목적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정교

합 및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의 통제활동과 본점에서 이뤄지는 통제활동의 정교함에서 차이가 날 경우, 발생 가능한 오류의 정도(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중요한 차이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은 백만원 이상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본점은 1억원 이상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상 정교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처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제활동은 오류 등의 발견 및 제거에 대한 적시성이 높은 반면, 해당 거래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통제활동은 적시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차이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중요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제활동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각의 통제 활동 별로 판단하고 좀 더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핵심통제활동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사가 의도적으로 본점의 모니터링 성격의 통제활동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이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Q&A

[Back to top](#)

## VI. 이벤트

### 2월 CFO Luncheon Forum (오찬포럼)

- 일 시: 2019년 2월 19일(화) 12:00~13:30
- 대 상: 한국CFO협회 회원
- 주 제: 최근 정부조사 동향과 기법 - Fact Finding과 대응”
- 신청방법: CFO협회 이메일(webmastercfo@cfokorea.org) 또는 전화(02-755-8671)로 신청
- 주 최: 한국CFO협회

[Back to top](#)

### 제1차 결산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교육

- 일 시: 2019년 2월 19일(화) 09:30~17:30
- 장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회관 소회의실3(지하2층)
- 내 용:

- I.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상의 주요 결산 핵심항목의 결산수정절차와 계정별 주요 회계감사기법과 사전준비자료 해설
- II. 주요 항목의 결산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대비 사전준비자료 해설
- III. 이연법인세 결산대비와 자본금과 적립금(을) 명세서 작성 및 해설
- IV. 국고보조금 활용한 연구·인력개발비 결산 회계처리와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유의사항



- 신청방법: 이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
- 주 최: 서울상공회의소

[Back to top](#)

## Key Contacts



신경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양승열 부대표

K-SOX TFT Leader

김진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하균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변재준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철희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채민선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한기원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https://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